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62
----------	------

발의연월일 : 2023년 10월 27일

발의자 : 임희도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증가하는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를 입고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범죄피해자에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이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신설 (안 제3조제10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0. ~ 10. 26.

- 의견 내용 : 의견없음

바. 부서협의 결과(복지정책과) : 특이사항 없음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